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발의연월일 : 2007. 4. 6.

발 의 자 : 박희진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공회전 제한 효과가 적음으로 인해 공회전 제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상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나.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삭제함(안 제5조제5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07년 추경에 예산확보 예정

○ 소요예산 : 3,000천원

- 자동차공회전 홍보물 제작 : 300원 × 10,000부 = 3,000천원

다. 합 의 : 환경정책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회전 제한)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신 설)</u></p>	<p>제4조(공회전 제한) ①----- ----- -----.</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p>
<p>제5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u>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u></p>	<p>제5조(적용 예외) ----- ----- -----.</p> <p><u>(삭 제)</u></p>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①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다만,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 한다)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다. 박물관 · 미술관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 제한)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 ·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 공무원) ①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 온도계 · 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단속)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 · 징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대하여는 법 제59조제2항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 · 이의제기방법 ·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 관리 및 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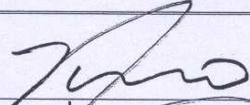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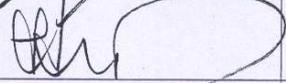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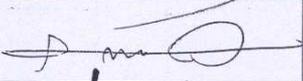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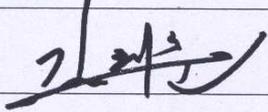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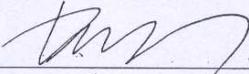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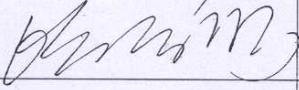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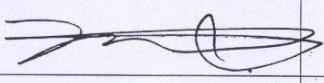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찬 성 의 원 명 단

찬 성 의 원	서 명	비 고
김 재 경		
권 형 비		
심 중 롱		
김 최 훈		
김 인 석		
박 수 범		
박 희 권		

대전광역시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4. 12.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4. 6 박희진의원외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7. 4. 9.
- 다. 상 정 일 자 :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4. 12)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희진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조례」가 공회전 제한 효과가 미흡하여 이를 기상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대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 시간을 10분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 나.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삭제함(안 제5조 제5호)

Ⅲ. 검토의견(전문위원 : 인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효과가 미흡하여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여 대기환경을 보호코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하였으며,
- 제5조 제5호를 삭제하였음.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 공회전 제한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